

2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영유아담당관 : 최경화 ☎2133-5088 특화보육팀장 : 김은진 ☎5115 담당 : 이소정 ☎5089

□ 총 1건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
<p>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및 의무 이행 방법 다양화 (영유아담당관, '24.2.21.) → 보건복지부 건의</p>	<p>□ 현 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는 “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” (공표 및 공표제외 사업장 소명 포함)와 실태조사 후속조치(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)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운영○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방법 유형이 2가지로 제한되어 운영 중 <p>□ 문 제 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명단 공표 기업 등 포함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재조사로 행정력 낭비와 명단 공표 제외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(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)시 민원 발생○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마련 기업에 대한 참여 유인 부족 및 위탁보육료의 불합리한 과세에 관한 민원 발생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실태조사 시 소명이 완료되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공표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인정하고, 명단 공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후속 조치○ 의무 이행의 다양한 방식 포용, 과세제도 합리화 필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의무이행 사례: 상시재택근무자 수 비율, 영유아 보육수당 등 <p>(※ 과세제도 합리화는 '24.2.29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)</p> <p>□ 관련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제14조의2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4조의2, 제44조의3